

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5. 2.

자 은 동



1. 대상자

대 상 자		주 소	발급기간	공고사유
성명	생년월일			
표*민	2007. 4. 17.	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235	2024. 5. 1.~ 2025. 4. 30.	등기우편물 반송
강*우	2007. 4. 7.	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88	2024. 5. 1.~ 2025. 4. 30.	등기우편물 반송
김*훈	2007. 4. 3.	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길 40	2024. 5. 1.~ 2025. 4. 30.	등기우편물 반송

2. 공고기간 : 2024. 5. 2.~5. 17.

3. 신청장소 :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4. 발급기간 : 2024. 5. 1.~2025. 4. 30.(12개월간)

5. 발급준비물

-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(사진이 부착된 증명서)
 -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이·통장의 확인을 받거나,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(신분증 지참)하여 확인 가능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(3.5cmX4.5cm)
 -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, 제출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발급기간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받게 됩니다.

(문의전화 : 055-548-6568 담당자 : 배소영)